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27

발의연월일: 2021. 3. 11.

발 의 자:이정문・기동민・김성주

김철민 · 도종환 · 민형배

박상혁 • 변재일 • 신동근

안민석 • 이용빈 • 정필모

황운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공사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정 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주택정책의 집행기관 및 관련업무 자의 미공개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의 매입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 으며,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보호하여 정부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제1항 중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 ③ (생 략)	방지대책) ① ~ ③ (현행과 같
	<u>o</u>)
<u><신 설></u>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위
	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u>수 있다.</u>
<u> <신 설></u>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신
	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
	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
	<u>서는 아니 된다.</u>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을 위	제57조(벌칙) ①
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u>	
<u>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
<단서 신설>	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u> 벌금</u>

<신 설>

② (생략)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58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2. • 3. (생략)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
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의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
<u>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 3. (현행과 같음)